



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

사이버 공간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업의 중요 사업 문서를 훔친다면, 인쇄매체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방한다면, 혹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 인 것처럼 타인을 속인다면, 이 모든 것은 분명 범죄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행위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범죄처럼 인식되지 않거나 애써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체계화된 법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환경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쉽지않은 않다. 정책개발단 법제 분석팀은 그래서 더 바쁘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급변하는 IT 환경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용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악성코드의 유포, 불법복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들 문제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사이버 공간에 국한된 문제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이버 공간은 이미 우리의 생활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법률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정보통신부 혹은 KISA 내 각 사업팀이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법률을 제·개정해 왔지만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2006년 4월 법제분석팀이 생겨나게 됐죠.” 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 이창범 팀장의 설명이다.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비롯해 국내외 정보보호 관련 법제 동향, 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필요한 법률과 규제, 그리고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정보통신망과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법률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이버 법률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형법과 민법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국가별로 기간망에 대한 보호조치가 등장하고 있다.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법률적 고민이 국내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리의 법체계는 법조항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특정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사이버 혹은 온라인상의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가령 디지털화된 정보의 개념을 어떻게 간주할 것이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의 불법 취득을 비롯해, 시스템 해킹, 정보유출 등을 규제할 수 없는 노릇이죠. 때문에 데이터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규정하고 규제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봐요”라는 이 팀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상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선 전문화된 사이버 법률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통부와 KISA,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 스팸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해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정보통신망법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보호를 담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봐요”라며 이 팀장은 온라인을 위한 법이 가지게 될 체계와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기존 법률이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요소도 이번 개정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등 온라인상의 거래와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해 왔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여러 행위들, 특히 문서 위주의 환경과 오프라인의 여러 법적 절차들이 인터넷 혹은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질 때에도 유효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가 필요하다고 봐요”라는 이 팀장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위한 법률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 사이버 법률 교육,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IT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의존할 것이라고 봐요.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사이버 상의 법률을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이 팀장의 주장 속에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가 전제돼 있다.

사실 현재의 사이버 법률을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댄다면 온라인상의 많은 이용자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개인정보의 남용 및 악용, 명예 훼손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온라인상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나이 어린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규범과 윤리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타인을 때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이버 관련 윤리교육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 가정이나 학교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건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팀장은 이를 위해 유치원과 같은 어린 시절부터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이곳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물론 그 교육을 위한 모범답안은 이들 법제분석팀의 몫이겠지만 말이다. **S**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행위는 왜 위법인지를 잘 알려줘야 하겠죠.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률 역시 기존의 형법이나 민법처럼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 이창범 팀장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특화된 법률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